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
결정

사건 2014과119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위반자 임
고양시

주문

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.

이유

기록에 의하면, 위반자가 2014. 4. 13. 경 기45번2025 협약을 운전하면서 사업구역 외
인 김포시로 운행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. 고양시가 2013. 10. 21.경 위 택시의 운송사
업자인 신도택시에 사업구역 밖 운행요구도 이행하도록 운수종사자에게 지시할 것을
명령한 사실은 인정되나,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운
수종사자에게 사업구역 외에도 운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
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
(가까운 김포시가 아니라 가령 부산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는 승객을 태우지 않았을
때에도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 준수의무 위반이 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,
그렇다면 사업구역 외 지역 가운데 어디까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에 해당
하는지 한계를 짚어하기 어렵다).

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
이 결정한다.

2014. 7. 29.

증정합니다.
서기 2014년 7월 29일

판사 이규영 회생부회장 고양지방법원
법원주재